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2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4조제2항제6호)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37조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제1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한강공원 내 운영 중인 선박, 체육시설 등 공원이용시설 이용자가 제로 페이로 결제 시 이용료의 10% 이내로 감면함에 따라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시설에 대한 수입 감소분 보전 및 직영시설 세외수입 감소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손실 보전 및 세외수입 감소분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김 일 환 (02-3780-0807)